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3. 5.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3년 2월 18일

나. 제출자 : 박정자 의원 외 4인

다. 회부일자 : 2013년 2월 21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7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3. 2. 2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정자 의원)

가.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장애인체육 진흥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장애인체육 활동의 육성·보호에 필요한 지원 대상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장애인체육동호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장애인체육 진흥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본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육성·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에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장애인체육 진흥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지원 대상사업을 적시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통해 장애인 체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흥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5조는 구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체육동호회의 구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직선거법」의 기부금품 제한 규정의 저촉을 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상호간에 건강증진을 통한 교류 및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는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의 토대를 마련해 주고, 더 나아가 장애를 갖고 생활해야 하는 장애인들의 스트레스를 지속적인 생활체육을 통하여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도모하고 삶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 시행시 체육 동호회 결성 및 체육단체 발족 등의 후속 대책 마련을 통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박정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
----------	-----

발의년월일 : 2013년 2월 일

발 의 자 : 박정자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다. 장애인체육 진흥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라. 장애인체육 활동의 육성·보호에 필요한 지원 대상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마. 장애인체육동호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바. 장애인체육 진흥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장애인체육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다. 합 의 : 문화체육과

라. 자치법규안 : 별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5.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6.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7.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진흥시켜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매년 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필요한 장애인체육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동 및 육성·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동호회와 장애인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이하"선수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2.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제6조(장애인체육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를 장애인체육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보조 및 위탁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관리 조

례」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